

오메가3 추출제품의 수입자 라벨 확인

조사회신일 : 2016.5.31

품목 : 오메가3

I. 상품개요

- 상품명
- 오메가3
- 상품 형태
- 타블렛

II. 수입자 라벨 표시안

1. 수입자 표기 라벨

- 제품명 : 오메가3
- 내용량 : 500mg*130정(75g)
- 원재료명 및 함량 : 들기름유지95%, 대두함유, 글리세린
* 정보 보호상 일부 성분 및 배합률은 실제와 상이함
- 포장재질 : HDPE-용기, PP-뚜껑
- 복용량 및 복용방법: 1일1회, 1회2정을 물과 함께 복용해주십시오.
- 복용시 주의사항 : 특이체질과 알레르기체질의 경우, 드물게 과민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원료를 확인후 복용하여 주십시오.
- 상미기한이 지난 제품은 복용하지 말아 주십시오.
- 보관방법 :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 주십시오.
- 교환처 : 본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로 제조되었습니다. 만일, 구입시에 변질과 오염이있는 제품은 구입처에서 교환해 드립니다.
- 제조원/소재지 : ◻◻◻

※본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.

※부작용 등의 신고는 000-0000

2. 영양성분표시

영양성분표	섭취량:2정(1,200mg)
[필수지방산] 필수지방산 보충	
1일섭취량의 함유: 에너지 15kcal, 탄수화물 0g, 단백질 0g, 지질 2g(2%), 나트륨 0mg(0%), 리노렌산 650mg	
※괄호안의 수치는 1일 필요한 영양소에 대한 비율	

III. 라벨 확인 결과

1. 수입자 표기 항목 기재순에 대해

- 명칭, 원재료명, 첨가물, 내용량, 상미기간, 보존방법, 원산국명, 수입자 순으로 기재해야 하며, 상기 이외의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수입자 뒷란에 표기해야 합니다.
- 원재료명 기재방법은 하기 3항 원재료 기재방법을 참조하십시오.

2. 상품 명칭에 대해

- 표시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. 항목명은 명칭, 품명, 종류별 또는 종류별명칭으로 기재하십시오.
- 제품내용을 확인 검토하여 「○○함유상품」(○○는 「n-3 계 지방산」 등의 성분명) 등으로 기재하십시오.

3. 원재료명의 기재방법에 대해

- 원재료명과 첨가물은 아래중 하나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.
 - 원재료명, 첨가물 각기 사항명란을 표기합니다.
 - 원재료명과 첨가물을 「/」의 기호를 이용하여 구분표시합니다.
 - 원재료명과 첨가물을 개행하여 표시합니다.
 - 원재료명과 첨가물을 선을 그려서 별도의 란으로 표시사항명은 「원재료명」로 기재합니다.
 - 들기름유지 95%로 D-a-토코페롤 0.1%는 배합비율로 추정되나 캡슐에 사용된 첨가물도 포함하여 원재료명을 기재해야 함으로 배합비율 기재를 삭제하시고 첨가물이 중량순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.
- 들기름유지 95%
 - 2차원재료에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. TBHQ 등은 일본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수입시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 - 수입제품의 경우 원료에 중국산이라는 산지 표기가 불필요합니다.
- D-a-토코페롤
 - 첨가물 용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. 산화방지제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용도를 병기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. 기재예 : 산화방지제(비타민E)
 - 알레르기물질 표시가 필요합니다. 첨가물이 특정원재료등에 유래하는 경우에는 첨가물의 물질명에 괄호를 넣어서 표시합니다. 기재예 : D-a-토코페롤(비타민 67%) (대두유래)
 - 또한 「(비타민 67%, 대두)」의 기재에 대해 D-a-토코페롤의 비타민E 함유량

과 유래원료라고 보여짐으로 기재가 불필요합니다.

4. 캡슐 기재에 대해

○ 변성전분(옥수수)

하기 첨가물에 대해서는 가교전분으로서 표시가 가능합니다.

- 아세틸화 아디핀산 가교전분
- 아세틸화 산화 전분
- 아세틸화 인산 가교전분
- 오크테닐코핵산 전분 나트륨
- 초산 전분
- 산화 전분
- 전분 글리콜 산나트륨
- 히드록시프로필화 인산 가교전분
- 히드록시프로필 전분
- 인산 가공 전분
- 인산화 전분
- 인산 모노에스텔화 인 가교전분

※ 전분 글리콜 산 나트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이 2% 이하일 것을 확인하여 주십시오.

○ 카라게닌

- 점증제, 겔화제
- 안정제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용도명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.

○ 100%식물성 연질 캡슐

- 원재료명란에 기재하는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.
- 상기의 원재료,첨가물 이외의 원재료를 지칭하는 기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물질을, 상기의 원재료,첨가물을 의미하는 기재의 경우에는 일괄표시의 테두리 바깥부분에 기재합니다.

5. 내용량의 기재에 대해

○ 내용량은 총량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기때문에 하기와 같이 기재합니다.

기재예 : 70g (500mg*130정)

6. 상미기간의 기재에 대해

○ 상미기간을 테두리 바깥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일괄표시의 틀안에 「상미기간」 이라는 사항명을 기재하고 상미기간의 표시장소를 기재합니다.

기재예 : 상미기간 틀 바깥 오른쪽에 기재

7. 원산국명의 기재에 대해

- 수입품이기 때문에 「원산국명」이라는 사항명을 기재하고 원산국을 기재합니다. 기재예 : 원산국명 한국

8. 수입자의 기재에 대해

- 수입품이기 때문에 「수입자」라는 사항명을 기재하고 수입업자의 명칭, 주소를 기재합니다.

9. 영양성분표시에 대해

- 사항명은 「영양성분표시」라고 기재합니다.
- 식품단위의 기재는 「2알(1000mg) 당」이라고 기재합니다.
- 영양성분의 표시는 「열량, 단백질, 지질, 탄수화물, 식염상당량」의 순서로 기재합니다.
(식염상당량은 「식염상당량(g)=나트륨(mg)*2.54/1000」의 계산식에서 산출)
- 리놀렌산은 식품표시기준에 정해져있는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테두리 바깥에 기재합니다.
- 「1일에 필요한 영양소에 대한 비율」에 대해 일본에서의 기준 수치가 아닌 경우 삭제합니다.
- 「오메가3」 등의 n-3계 지방산의 함유의 취지를 기재하고 있으므로, 테두리 안의 지질의 아래에 한칸 띄어서 「n-3계 지방산」(표시단위 : 그램(g))의 항목을 설치하여 함유량을 기재합니다. (리놀렌산 이외의 n-3계 지방산도 포함한 합계치로 표시)
기재예 : 성분표시(2알 (1000mg)당)
에너지: ○ kcal, 단백질 : ○ g, 지질 : ○ g (n-3계지방산 ○g), 탄수화물 ○ g, 식염상당량 ○ g

10. 보건기능성 식품의 기재에 대해

- 특정보건용 식품 또는 영양기능식품, 기능성표시식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표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.
(규격 기준형의 영양기능식품은 특정 영양소의 함유량이 기준을 충족시킬때 영양킬 경우 영양기능식품으로서 기재 가능)

11. 복용방법 기재에 대해

- 섭취량의 단정은 의약품적인 표현입니다. 「2알을 기준으로」 등의 기재를 검토하여주십시오. 또한 「식품으로서의 기준임」을 명시한 뒤에 일일 권장량을 기재해야합니다.

「영양보급식품으로서」 등의 추가 기입을 권장합니다.

12. 유기 표시에 대해

- 일본에서의 유기 JAS를 섭취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「유기○○ 사용」 등의 기재가 가능합니다.
- 원재료명으로부터 들깨에 유기원료를 사용한것이 확인 되었으므로 사용된 들깨가 100% 일본에서 유기 JAS를 취득한 원재료인지를 확인하십시오. (일부 사용의 경우에는 사용비율을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.)

13. 의약품과의 혼동을 불러 일으키는 표현에 대해

- 「부작용」 등의 표현은 의약품에 사용하는 표현임으로 피하여 주십시오.
다른 표기에 : 「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신속히 섭취를 중지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」
(「의약품이 아님」을 나타내는 식품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이 부적절하다고 고려됩니다.)

14. 리사이클 마크에 대해

- 포장재질에 대해서는 일괄표시 테두리 바깥에 기재 합니다.
- 플라스틱 리사이클 마크는 우측마크.
- 우기의 마크의 부근에 「본체, 뚜껑」 등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부분에 표시합니다.



15. 문자 크기 및 재활용 마크

- 일괄 표시 및 영양 표시의 글자 크기가 8 포인트 이상임을 확인하십시오
(표시가능면적이 대략 150cm²이하인 경우에는 5.5포인트 이상 활자 기재.)
- 플라스틱 마크의 한번의 높이 및 종이 마크의 높이는 6mm 이상입니다.
- 문자크기는 JIS Z8305규격 (1포인트=0.3514mm)에 따르십시오.
- 원재료명 부분에 대하여 원재료명과 첨가물을 [/]로 구분하는 기재방법도 인정됩니다.
- 표기란의 크기와 전문가와의 상담을 고려한 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